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080
----------	-------

발의연월일 : 2026. 9. 3.

발 의 자 : 백혜련 · 이강일 · 이광재
김영호 · 장철민 · 이수진
권향엽 · 서영석 · 전진숙
박상혁 · 김 윤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자원화가 가능한 핵심광물 등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망 강화를 위하여 재자원화 관련 시책의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정부의 국가자원안보를 위한 재자원화 정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재자원화산업의 규모, 기업 현황, 기술 수준 및 공급망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계기반이 미흡하여 재자원화산업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성과평가에 한계가 있고, 재자원화 분야의 신기술 및 신사업의 경우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 및 사업화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는 재자원화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이를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자원화산업 관련 규제특례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핵심자원 재자원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자원안보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등).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재자원화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관리) ① 정부는 효과적
· 체계적인 핵심자원 재자원화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재자원
화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이를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재자원화산업 관련 규제특례 등 추진) ① 정부는 국가의 자
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핵심자원의 재자원화산업을 촉진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개발, 생산시설 신설·증설, 생산공정 개선, 설비 폐쇄

등과 관련된 환경·건축·에너지·안전분야 인허가 등 절차의 통합 또는 간소화

2. 재자원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경 관련 기준의 초과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의 특례
3. 신기술 적용 또는 신공정 전환에 따라 필요한 기술 검증이나 평가 기준의 미비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
4. 재자원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같은 법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0조제4호 중 “제36조”를 “제18조의2제3항, 제36조”로 한다.

제41조제2호 중 “제36조”를 “제18조의2제3항, 제36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8조의2(재자원화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 관리) ① 정부는 효과적 · 체계적인 핵심자원 재자원화 시책의 수립 · 시행을 위하여 재자원화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 · 관리하고 이를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활용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u> <u>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신 설>

제18조의3(재자원화산업 관련 규제특례 등 추진) ① 정부는 국가의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핵심자원의 재자원화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개발, 생산시설 신설·증설, 생산공정 개선, 설비 폐쇄 등과 관련된 환경·건축·에너지·안전분야 인허가 등 절차의 통합 또는 간소화

2. 재자원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경 관련 기준의 초과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의 특례

3. 신기술 적용 또는 신공정 전환에 따라 필요한 기술 검증이나 평가 기준의 미비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

4. 재자원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같은 법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

제40조(비밀준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자원안보에 관한 비밀정보를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u>제36조</u> 또는 제37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제4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생략) 2. <u>제36조</u> 또는 제37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u>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u> 제40조(비밀준수의 의무)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18조의2제3항, 제36조</u>----- ----- ----- ----- ----- 제4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 ----- ----- ----- ----- -----. 1. (현행과 같음) 2. <u>제18조의2제3항, 제36조</u>----- -----
--	--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탁 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 ----- ----- -----
--	----------------------------------